



糸賀一雄の発達保障の思想と実践：この子らを世の光に、人格発達の権利の徹底的保障（発達保障）、横（軸）の発達～能力程度主義から発達必要原理への転換～

渡部, 昭男

鄭, 修娟

(Issue Date)

2025-10-30

(Resource Type)

learning object

(Version)

Not Applicable (or Unknown)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98067>



▶ 한국국립공주대학교 (2025.10.30) BK21 미니 강연③ 18:30-19:00

이토가 카즈오의 발달보장 사상과 실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격발달 권리의 철저한 보장(발달보장)、수평(수직)의 발달
~능력정도주의에서 발달필요원리로의 전환~

와타나베 아키오

전 돗토리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장 (2002-05)

<https://special-main.fuzoku.tottori-u.ac.jp/>

전 고베대학부속 특별지원학교장 (2016-18)

<https://www.edu.kobe-u.ac.jp/hudev-yougo/web-content/Welcome.html>

인간발달연구소 부소장 <http://j-ihd.com/>

【저서】

- 2016 공저『인간발달연구의 창출과 전개: 다나카 마사토·다나카 스기예의 업적을 통해 역사를 잇다』군조샤 ISBN978-443422101-9
- 2019『능력·빈곤에서 필요·행복추구로: 청년과 사회의 미래를 여는 교육무상화』일본표준 ISBN978-482080653-0
- 2021 공저『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다』산가쿠출판 ISBN978-490887736-0
- 2022『개정신판 장애를 가진 아이의 취학·진학 가이드북』일본표준 ISBN978-482080721-6

【논문】

- 2015 The Last Message of Kazuo Itoga: "Let These Children be the Light of the World": A Historic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Development to Al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4(1)17-20

<https://da.lib.kobe-u.ac.jp/da/kernel/90003267/90003267.pdf>

- 2016『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사랑과 공감의 교육-』:한국어로의 임시 번역에 있어서 <https://da.lib.kobe-u.ac.jp/da/kernel/81009360/81009360.pdf>
- 2016 한국어 임시번역 이토가, 카즈오 ; 김선옥 ; 박지민 ; 장주선 「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사랑과 공감의 교육」 <https://da.lib.kobe-u.ac.jp/da/kernel/81009517/81009517.pdf>

관련업적①



- 2021 일본교육학회 제80회 대회RT:이토가 카즈오의 「생산성」을 둘러싼 대화
일본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76306/0100476306.pdf>
한국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76307/0100476307.pdf>
- 2021 고베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강연: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다:이토가 카즈오로부터의 메시지※
일본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90008817/90008817.pdf>
한국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90008973/90008973.pdf>
- 2022 일본교육학회 제81회 대회RT:이토가 카즈오의 「수평으로의 발달」을 둘러싼 대화
일본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76308/0100476308.pdf>
한국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76309/0100476309.pdf>
- 2024 교육법학설의 계승과 혁신 (제10회):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의 전환을 기폭:
시미즈 히로시「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생존=발달권」 『계간교육법』(220)76-80
일본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91608/0100491608.pdf>
한국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91609/0100491609.pdf>
- 2024 교육법학설의 계승과 혁신 (제12회):청년의 발달보장을 지향하는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론 :
다나카 마사토『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나카 마사토 (1932년-2005년) 『계간교육법』(222)72-77
일본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92449/0100492449.pdf>
한국어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92450/0100492450.pdf>

【영상】 YouTube ※한국어자막 2021 고베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ILHaCYuPOZc>

계속②

제 I 부: 이토가 카즈오의 발달보장 사상과 실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격발달권리의 철저한 보장(발달보장)、수평(수직)의 발달
와타나베 아키오2021「고베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강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다: 이토가 카즈오로부터의 메시지」를 요약

한국어PPT자료 <https://da.lib.kobe-u.ac.jp/da/kernel/90008973/90008973.pdf>

한국어 자막YouTube영상 2021고베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ILHaCYuPOZc>

제 II 부: 능력정도주의에서 발달필요원리로의 전환

일본국헌법「능력에 따른」、헌법학 다수설: 능력정도주의, 교육법학Ⓢ능력)발달의 필요에
따라／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세심히,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발달권 보장의 과제와 전망

와타나베 아키오2024「교육법학설의 계승과 혁신 (제10회):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의 전환을 기폭: 시미즈 히로시『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생존=발달권』『계간교육법』(220)76-80을 요약

한국어PDF자료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91609/0100491609.pdf>

이나바 잇빠키 : 모래언덕에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하늘

(다카야 키요시『이질의 빛』p.162)

이토가는, 필명을「이나바 잇빠키」로 작명할 정도로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리고 자주 불렀던 노래도 산인지방의 민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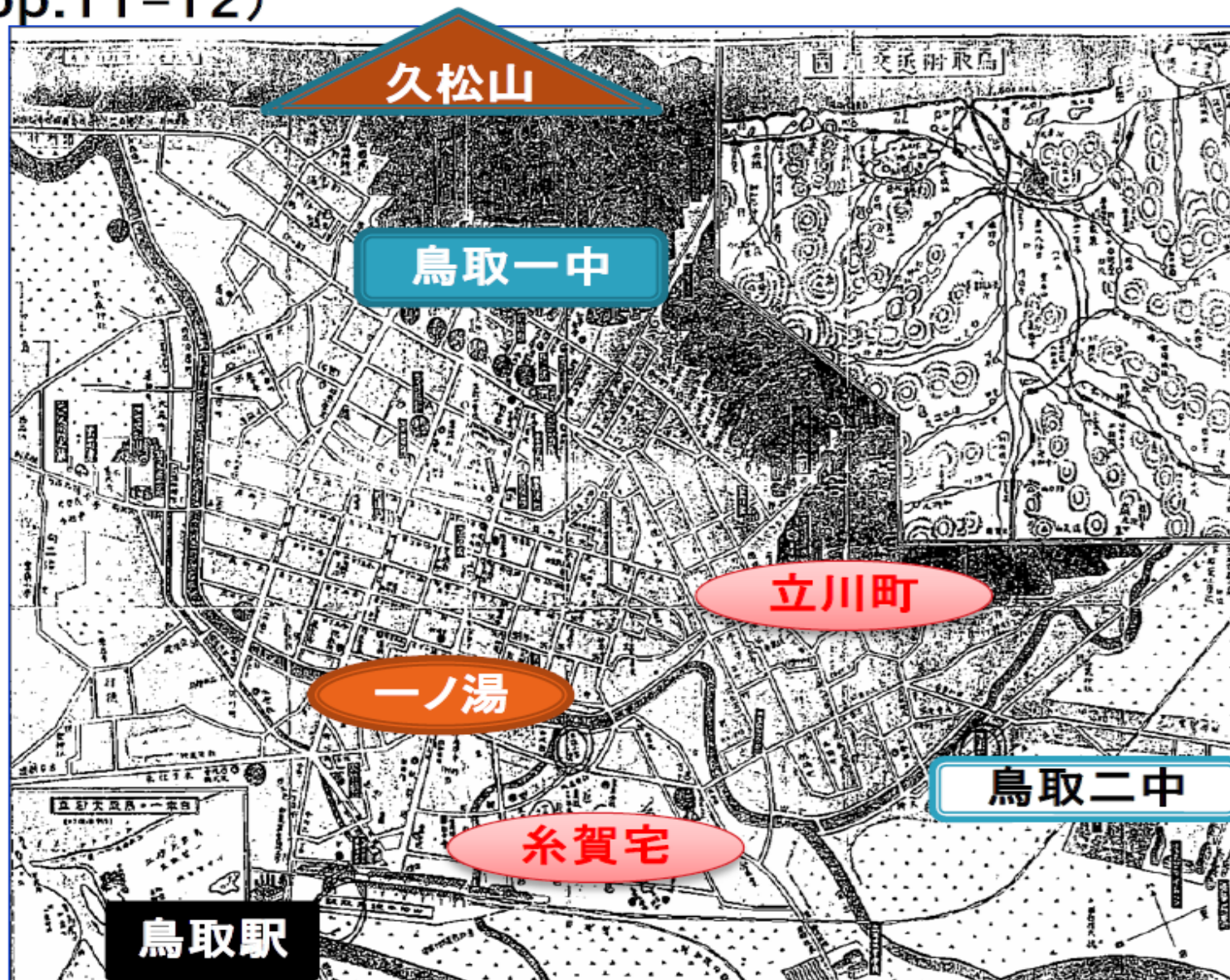
城の一中・自由(田舎)の二中:

*사춘기·청년시절을 보낸 전쟁전의 돗토리시
(다카야 키요시『이질의 빛』pp.11-12)

이토가는 자주「一ノ湯」에
놀러 갔고, 나카시마와 함께
공부 했다.

・ 1926년 4월 돗토리
현립 제2 중학교 진학

자유롭고 쾌활한 학풍으로
선생님과 제자가
협동하고 함께하는
이상과 패기가 있는
학교



구 마츠에 고등학교 : (四進五修) 1930년 4월

(다카야『이질의 빛』p.21)

(...이 해, 4학년생 9명이 고등학교에 진학.) 마루야마는 형을 따라 에히메현 마츠야마 고등학교, 이토가는 의사가 되고자 돗토리현 마츠에 고등학교 이과 A반 (A반 영어전공, B반 독일어 전공)에 진학.

(3인 단짝 이토가 카즈오·나카시마 타츠이치로 : 이과 A반, 오구라 치카오 : 문과 B반) 졸업앨범 ↓ 진학자 9명 : 마루야마·이토가·나카시마



— 景 全 —



城 文 山 圓



城 一 賀 糸



郎 一 達 島 中

道 正 内 堀

휴학·세례·교회활동·문과로 전과

(다카야『이질의 빛』「신앙, 그리고 지망 변경」pp.30-34)

1930~31년(1~2학년):도중에 결핵으로 1년간 휴학

1932년(18세)9/18:일본기독교연맹 돗토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음.

*마츠에 키타호리교회 소속

1933년~「신앙록」수기5편,고교 YMCA 리더

1934년:교회발행 잡지『성복의 등』편집자,원고4편·편집후기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 ⇒ 문과로 전과

[돗토리교회HP 설문과 사진]돗토리교회는 1890(메이지23)년2월 독립(설립)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돗토리현청 근처에 있음.* 현재는 전후 새로 설립된 건물로,이토가가
다녔던 당시의 것은 아니다.

마츠에키타호리교회↓(카와우치 키요미 칼럼『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2021) ↓돗토리교회(HP)



写真: 1980年頃の旧会堂(糸賀一雄が通った当時のたたずまいを残していた)



교토제국대학 문학부철학과: 1935년4월 입학

(다카야『이질의 빛』「만남」pp.34-42)

1934년 여름:일본기독교회 중국지방 하기 수련회

히로시마현 후시야마시~엔조사 총괄 코사코씨 집에서 숙박
(p.40)이토가는 마츠에 돌아온 후 곧 감사의 편지를 보냄/
후사도 답장을 보내고 가끔씩 편지를 주고 받다가 마침내
매일 편지를 주고 받았다.많을 때는...
신앙심이 깊고 현명하며,또한 열정가라고 생각했다.

(pp.44-45)

이토가와 후사는,1936년2월11일,
히로시마현 후시야마교회에서...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직후3월 마루야마가 산에서 조난으로 사망)

이토가 카즈오와 고향(돗토리·마츠에·산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①돗토리현2014:이토가 카즈오 미트 레벤 고향·돗토리에서의 최후 강연
(돗토리현립도서관/책자와 1968.2강연 육성녹음 대출가능)

②쿠니모토 신고2021:제5장 이토가 사상을「미트 레벤」를 통해 탐구
— 고향·돗토리에서의 발자취를 찾아서—

③카와우치 키요코2021:칼럼1 이토가 카즈오의「영혼의 고향」마츠에

②③は『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삼학출판2021수록

이토가의 고향에 대한 생각 열정을 가진자가 역사를 만든다

돗토리현립도서관소장(글 사진은 도서관HP)
원 국가철도 총제 소고신지의 휘호

(다카야『이질의 빛』p.99소고와의 만남)

*이토가 기념회1989『추모집 이토가 카즈오』
(PDF 소고신지「서문」pp.1-3)

*이토가가(家) & 시가현의 보물이 왜 돗토리에
현립도서관개원1주년 기념「이토가 카즈오 공로전」2002
이토가家・오오미학원 기증

(와타나베 아키오2014「이토가 카즈오와 고향 돗토리」
『이토가 카즈오 탄생100년 기념 논문집』)

「(이토가가)돗토리를 고향으로 간절하게 원했던
그의 바람을 형태로 남을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는 것은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다.」이토가 부인 후사씨

いつか、彼に包まれて、「情熱をもった人間が歴史をつくる」と書いておくれたことがあ
す。歴史をつくるものは情熱と勇気だ、君はそう考えているんだろう。正しく君は勇気があり
熱があつて、個と全とを一体にし、融合することを心掛け、また実現している。それが君の最
でたところである——こう僕は考え、願って書きおくれたのであります。僕が彼について一
だと感心するところは、彼が、彼の個人生活と彼の国家的理想というものを一体にしている
あつたからです。



제2키누가사 심상초등학교 대용교원

(다카야 『이질의 빛』 「초등학교의 교원은 최상위 교육자」 pp.61-63)

1938년 : 4 학년 여자반 대용교원시절 이케다 타로 & 기무라 모리모토와의 만남 (pp. 75-78)

- 우선 인간은 착함 · 아름다움 · 현명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여 노력 하는 존재임 = 向上愛 (향상애) = 인간성 향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에로스)
-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 존재이기도 하다. 향상적이라는 차원에서는 미완성이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는 타인과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 絶対愛 (절대애) =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승인하고 긍정하는 것 (아가페)

교토&시가 시대의 약력

1938년(24세)졸업／제2키누가사 심상초등학교 대용교원

*이케다 타로·기무라 모리모토와의 만남

1939년(25세)돗토리 제40연대 ／ 병으로 소집해제

*거의 전원 전사

1940년(26세)시가현 사회교육주사보

1941년지사 관방 비서 과장／콘도 조타로 지사에게 사사

*학생의용군 운동 참가／소고 신지의 신뢰를 얻음

1942년 三津浜학원에 이케야마 타로 추천

1943년 石山학원에 타무라 이찌지 추천

1945년 종전／경제부 식료과장

1946년 기무라 모리모토 타계／결핵 재발@真野浜에서 요양
오오미학원설립취지서／11月오오미학원창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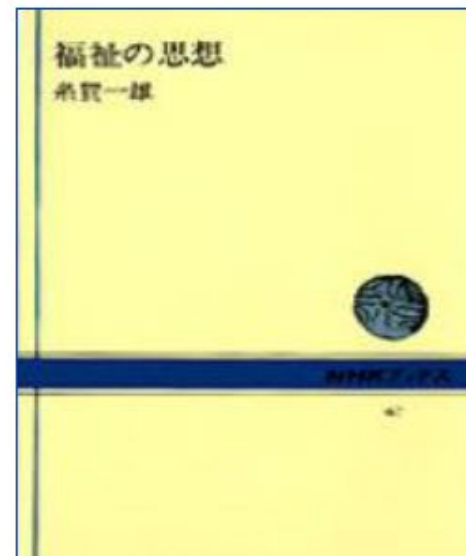
복지의 사상

이토가카즈오 1968『복지의 사상』일본방송출판협회

①[pp.9-16] 시작하며

p.9 나 자신은 그 속에서 애태우며 고민해,
그리고 작지만 진전을 위해 싸워 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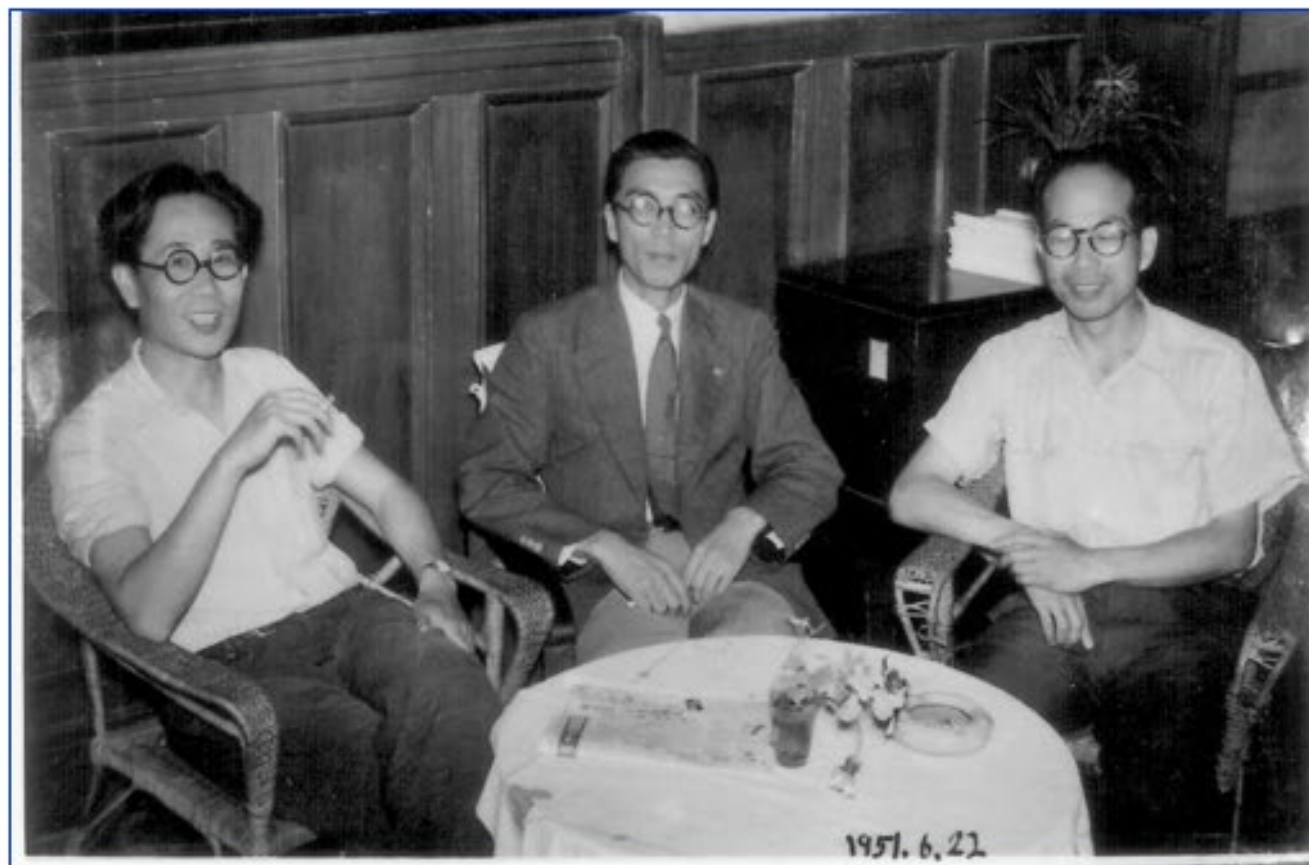
구체적인 사회복지 문제는 오오미학원이라는 역사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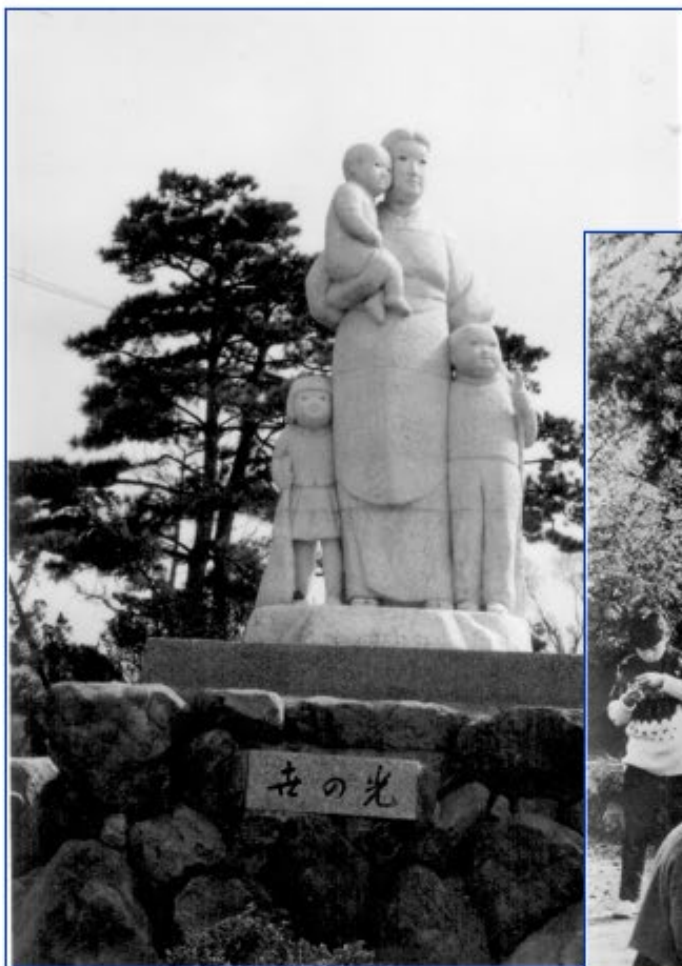


p.10 **인간의 새로운 가치관 창조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투쟁의 일환 . . . 우리 자신의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혁 . . .

오오미학원 조감도 이토가카즈오저작집 I 1982년







복지의 사상

②[pp.17-53] 1. 정신 박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37 **사회의 내면적인 변화이며, 진보이며, 오히려**
교육적 혁명이라고 해도 좋다...

52 **한 구석 (켄)을 진지하게 비추는...** 그 실천이
깊은 세계를 통해,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되어간다.

③[pp.55-80] 2. 사회복지의 기본
64 **이 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며,**
생명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인간으로서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랑으로 공감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 「복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복지의 사상

④[pp.81-101] 3. 권리사상 형성

⑤[pp.103-128] 4. 장애인의 삶의 보람

107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가는 **만인 공통인 발달 과정을 밟는다.**

116-117 산송장...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그렇지 않았다.

⑥[pp.129-150] 5. 정신박약자 시설에서의 「**요육**」에 대해서

133-137 1946년~병원→1948년 목조2층건축→1953년

「**술잎반**」훈련과 보호 집단

144-145 영구불치 환자→요육,즉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비와코 학원)

148 시설에서는,특히 **집단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추구한다.**

그 실천에 관한 기록이야말로 보물...동시에 **직원의 끊임없는 인격형성...**

복지의 사상

⑧[pp.167-188] 7. 발달보장이라는 생각

172 중증장애아동 ... 모든이들의 발달보장의 사상과 기반, 방법 탄생

175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이 아이**」라고 하는 **살아 있는 생명, 개성 있는 이 아이**... (와타나베: 이 아이·들을·세상의 빛으로)

176 보호라고 하는 명목으로 길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 리하빌리테이션 → 하빌리테이션(인간으로써 형성)

177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개성적인 자기실현... 자기실현이야말로

창조이며, 생산이다...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격발달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

...빈곤하고 좁은 인격이 아니라, 풍부하고 따뜻한 인간으로 키우고 싶다.
세 살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라도 그 세 살이라는 발달단계 **안에는 무한하고 풍부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체제, 기술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위한 실천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공통 문제...

복지의 사상

⑨[pp.189-244] 8. 지역복지에서

232 **지역의 구체적인 니즈**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음미하고 조사하고, **소셜액션(사회적활동)**...으로써, **사회까지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메김한다...**

232 **복지의 사상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32 **사회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맞서야 한다.**

244 **주민의 니즈를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여 모든 주민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가로축으로의 발달」등 이토가카즈오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①垂髪あかり2020:〈가로축으로의 발달〉이란 (일본표준 리플렛23)

②蜂谷俊隆2021:第2章 이토가카 즈오의 생애와 사상

③垂髪あかり2021:第3章 —중증심신장애인(아)「자기 이해」의 길

④門前斐紀2021:第4章 —기무라 모리모토「형성(性)」과 이토가 카즈오「생산(性)」

⑤遠藤六朗2021:第8章 —이토가 카즈오「생명사상」을 출발점으로

⑥中野リン2021:第13章 이토가 카즈오과 마사·C·누스밤의 능력력 어프로치

②~⑥『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삼학 출판2021수록

일본국 헌법: 그 능력에 맞게 (26조)

· 宮澤俊義 미야자와 도시요시 1955『일본국 헌법 코멘타르 편』일본평론신사 pp.267-268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능력(학력·건강 등)에 따라 차별받은 것은 당연하다...

· 이토가 자신도,「문제아」「영원한 유아」「낙오자」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특별한 보호의 환경을 사회가 마련하여／

거의 인지능력이 없는 그들이 안심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외에는／해결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토가 카즈오 저작집 I 1982 p.400)

사상마동 : NHK스페셜 라스트 메시지 제6집2007

· 이토가는 처음부터「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인격발달 권리의 철저한 보장」「가로 (가로축으로의) 발달」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 사상마동 양명학의 생각NHK라스트 메시지2007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 지식과 정신을 수양하는 것

⇒ **자신과의 싸움 자기성찰을 통해 능력관을 전환**

· 1960-61년: 유럽 순방, 1961년: 오오미학원 연보에 「발달보장」제기, 1963년: 비와코학원 창설,

1965년: 일차원의 아이들, 1967-68년: 새벽이 오기 전의 아이들·1968년: 9/17시가현 아동복지시설 등 신임직원연수회「시설에서의 인간관계」

『이토가 카즈오—사랑과 공감 교육—(개정판)』(나카가와 서점2009)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란 말을 남기고 쓰러진 후 다음날 타계



제 I 부: 이토가 카즈오의 발달보장 사상과 실천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격발달권리의 철저한 보장(발달보장)、수평(수직)의 발달
와타나베 아키오2021「고베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강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다: 이토가 카즈오로부터의 메시지」를 요약

한국어PPT자료 <https://da.lib.kobe-u.ac.jp/da/kernel/90008973/90008973.pdf>

한국어 자막YouTube영상 2021고베대학 부속 특별지원학교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ILHaCYuPOZc>

제 II 부: 능력정도주의에서 발달필요원리로의 전환

일본국헌법「능력에 따른」、헌법학 다수설: 능력정도주의, 교육법학Ⓢ능력)발달의 필요에
따라/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세심히,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발달권 보장의 과제와 전망

와타나베 아키오2024「교육법학설의 계승과 혁신 (제10회):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으로의 전환을 기폭: 시미즈 히로시『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생존=발달권』『계간교육법』(220)76-80을 요약

한국어PDF자료 <https://da.lib.kobe-u.ac.jp/da/kernel/0100491609/0100491609.pdf>

카네코 마사시(金子仁) 1971 · 1978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으로 수정

- ▶ 여기에서 말하는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을 확립한 것은, 교육법학의 바이블과 같은 존재인 카네코 마사시『교육법 [신판]』(유히카쿠1978)(兼子仁『教育法 [新版]』有斐閣, 1978)다. 신판에서 카네코는 구판의 능력정도주의에서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으로 해설을 바꾼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서 구판(1963년)의 70 · 74쪽에서는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는 교육에 있어 불평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의 보장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능력정도주의’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필자는 이미 이와나미신서(岩波新書) · 국민의 교육권(1971년)139~142 쪽에서 본문의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으로 수정하였는데, 이 점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인간의 ‘능력’ 상태는 이제는 교육상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 그 조건 정비를 요구할 근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신판 233, 숫자를 한문으로 표기하고 세로쓰기 한 것을, 산용숫자 표기와 가로쓰기로 수정했다/ 이하 동일]

시미즈 히로시 1969『교육학연구』36(1)/ 1972『일본교육법학회 연보』(1)의 의의와 공헌

- ▶ 수정된 카네코 마사시『국민의 교육권』(이와나미신서 1971)
(兼子仁『国民の教育権』岩波書店, 1971)에는 그로부터 2년 전인
1969년에 발행된 『교육학연구』36권 1호를 논거로 이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람의 선천적인 학습권에 대한 실현 요구라고 한다면, 장애아동이야말로 그 권리 주체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육친으로서 더욱 강한 애정을 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불가능한 암담함 속에서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은 오로지 국가의 조건 정비에 달렸으며 부모의 취학 의무는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장애아동이야말로 능력 면에서 발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환경에서의 훌륭한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교육학계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로 『교육학연구』36권1호「특집・장애아 교육」1969년(쇼와44년)을 참조(『教育学研究』36卷1号「特集・障害児教育」昭和44年)). [142]

계속

- ▶ 그리고 『교육법 [신판]』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말하며 학습권설에서의 교육 조리 해석을 주창하는 부분에서는, 시미즈(등)의 저작물이 각주에서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첫 번째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의 적극적 조건 정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인권이라고 보는 교육인권성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경우,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학습권’ 즉 학습에 따라 인간답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이 그 학습권과 인간적 발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 조건 정비를 요구할 권리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는 문구도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2)) 능력 발달 방법에 따라 능력 발달을 할 수 있는(능력 발달상 필요에 따른) 교육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이미 교육법학계에서의 통설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31-232, 원문의 방점 표기를 밑줄로 표기함]

...학습권·발달권적 해석을 하면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장애아동은 치료와 함께 뛰어난 교육을 받는다면 조금씩이라도 장애를 극복하면서 인간답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명력을 더하는 것으로, 중도의 장애아동이야말로 인간적 발달권의 국가적 보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요 권리 주체로 다뤄져야 한다. [232, 중락을 . . . 로 표기함]

시미즈 히로시 1975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 으로의 정립 · 수렴

- ▶ 시미즈 논문 1969 · 1972의 역사적인 의의와 공헌은, 교육법학이 학습권 · 발달권적 해석으로 전환하는(헌법학에서도 주목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 ▶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이라는 핵심 문장은 시미즈 논문 1969에서 쓰이지는 않았다. 당시는 “발달에 필요한 여러 권리를 통일적으로 보장한다”(36)라고 서술됐다. 시미즈 논문 1972에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화가 아니라 그 장애에 대해서 필요한, 적절한 치료 · 교육 · 노동 · 보호 등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권리의 실질화 원칙이다”(141)(원문의 방점을 밑줄로 표기)라고 하며, “필요하고 적절한”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계속

- ▶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이라는 명료한 표현으로 정립·수렴한 것은 앞서 언급한 공동 편저 1975『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부터다. 표현에 대해 끈질기게 사색하고 고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헌법·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 균등” 조항의 “평등하게”는 신헌법의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에 바탕한 권리의 무차별 평등성 보장을 뜻하는 것으로, “능력에 따라서”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보완 규정으로, 전전(戰前)부터 이어진 장애아동의 발달 보장을 위한 실천·운동의 성과의 관점에서 본다면 “발달에 필요하고 적절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137]

시미즈 히로시 1979 '생존=발달권'론의 특징: 생존-학습-발달

- ▶ 한편, 소년법이 전문인 핫토리 아키라(服部朗)는, 2002「성장발달론의 생성」(『아이치가쿠인대학 논총 법학연구』44[1·2 합병호] 129-211)(2002「成長発達権の生成」『愛知学院大学論叢法学研究』44(1·2合併号)129-211)에서 생성되고 있는 성장발달권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선행 연구를 섭렵하여 '발달권의 법적 근거'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표1(4)). 시미즈 히로시 1979의 '생존=발달권'론에 대해, 헌법 14조(법 아래의 평등), 25조 1항(생존권), 26조 1항(교육을 받을 권리)을 그 법적 근거로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계속

<표 1> ‘발달권의 법적 근거’의 8 분류

헌법 14 조(법 아래의 평등) · 25 조 1 항(생존권)

· 26 조 1 항(교육을 받을 권리) 시미즈 히로시

헌법 25 조 1 항 · 26 조 1 항 . . . 이치방가세 야스코(一番ヶ瀬康子),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 26 조 1 항 · 27 조 1 항(근로의 권리)

. 이이노 세츠오(飯野節夫), 마키 마사나(牧柁名)

헌법 26 조 1 항

. 나가이 켄이치(永井憲一)

헌법 13 조 후단(생명 · 자유 · 행복 추구권의 존중)

· 25 조 1 항 · 26 조 1 항 . . . 호리오 테루히사(堀尾輝久)

헌법 13 조 후단 · 26 조 1 항 카네코 마사시(兼子仁), 제 1 도쿄변호사회

헌법 13 조 전단(개인의 존중) · 아동 권리 조약 6 조

. . . 후쿠다 마사아키(福田雅章), 야마구치 나오키(山口直也)

헌법 23 조(학문의 자유) · 13~22 조(‘국민의 권리 및 의무’의 총체)

· 25 조 2 항(국가의 생존권 보장 의무) · 26 조 1 항 · 27 조 1 항

. . . 카츠노 미츠유키(勝野充行)

계속

- ▶ 즉, 시미즈 히로시 1979「발달할 권리와 그 보장」(『발달의 보장과 교육』(이와나미 강좌・아동의 발달과 교육 제7권)1-37, 재수록 1981「'생존=발달권' 보장 이념의 전개-그 국제화 과정을 중심으로-」『발달 보장 사상의 형성』282-317) (清水寛1979 「발달 권리와 그 보장」(『발달 보장과 교육』(이와나미 강좌・아동의 발달과 교육 제7권) 1-37)에서 시미즈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아동의 권리의 국제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주도적인 아동 권리 보장의 이념・원리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생존=발달권 보장이라는 이념・원리다. [재수록 298]

이러한 '생존-학습-발달'이라는 인권의 논리와 사상이, 그 뒤 국민의 교육권 보장 운동에서 얼마나 보편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중증 심신 장애아의 발달 보장 운동 속에서 생성되어 온 생존=발달권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재수록 313]

1974「발달의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

- ▶ 시미즈가 일본교직원조합 위촉으로 만들어진 교육제도검토위원회(1970-74, 회장: 우메네 사토루[梅根悟])의 전문 조사 위원으로서, 「모든 장애인의 발달을 어떻게 보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장을 중심으로 문안 작성에 참여한 점도 중요하다. 교육제도검토위원회는 그 보고서『일본의 교육 개혁을 추구하며』(『日本の教育改革を求めて』, 케이소쇼보, 1974)에서 '교육에서의 정의의 원칙'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시미즈의 공적은 크다.

...이런저런 면에서 발달에 뒤쳐진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른바 능력이 높은 사람보다도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장기적인 보호와 교육을 보장해야만 한다, 한층 더 인간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재인식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85]

...우리들은 이렇게 재인식된 기회 균등의 원칙과 '발달의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의 원칙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교육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85-86]

발달권 보장 연구의 과제와 전망

- ▶ **첫 번째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나 그 둘의 변증법적인 발전 관계에 대하여, 시대의 진보에 걸맞도록 민감하게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 조항은 역사적으로는 '능력에 따른 경쟁의 자유' '능력 있는 자에게 열린 기회'라는 근대 사상(프랑스 인권선언 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봉건적인 신분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능력에 따라"는 역사적인 변혁이자 진보였다. 또한 세금이나 제반 경비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라고 하는 등,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점은 오늘날 기준에서 보더라도 한층 나아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적당히, 라는 능력정도주의 입장은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남용하거나 고교 선발제에 따라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능력정도주의는 일본 뿐만 아니라, 능력 차별을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영유아나 고령자, 따돌림 당하는 사람, 등교 거부자, 학대 피해자, 비행청소년, 다문화 아동, 나아가서는 빈곤층이나 지진 재해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해자, 전쟁 피해자 등 발달권 보장에 관한 실천과 운동이 미칠 영향 범위는 폭넓다. 21세기에 들어서 여러 실천과 권리 보장 운동이 진전된 점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되돌아보면서 과제와 성과를 찬찬히 살펴보는 공동 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두 번째로, 자유권적인 관점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사회권, 더 나아가 연대권 (連帶權)으로 넓히는 3층 구조적인 발달권 보장 이해를 들고자 한다. 발달권 보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평등론이나 생존권(사회권)과 같은 것이 강조되어 왔다. 시미즈 히로시의 논설을 포함해서 그것은 매우 타당한 이론 정립이며 정당한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따돌림·등교 거부 등 학교 교육 자체가 아동의 권리침해를 일으켜 부적응(때로는 자살)을 초래하는 실정에 비추어, 학교교육법 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통학하거나 취학하지 않을 권리(대안 교육의 권리)를 포함한 학습권론을 구축할 필요를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국헌법 26조 발달권의 법적 근거로 다뤄지기도 하는 13조의 '개인 존중,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의 존중'을 더하여 '전면적으로 열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달 필요에 대응하는 학습 보장에 대한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타나베 아키오 2003 「'발달 보장' '발달권' '학습권'론을 재검토하는 관점」 『장애인문제연구』31(2) 21-28). 13조에 관한 자기 인생 창조 추구권이라는 새로운 제안에도 주목하고자 한다(타케나카 이사오[竹中勲] 『헌법상 자기 결정권』세이분도 2010).

발달은 평화나 환경 등과 같이 한 국가가 홀로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지구 단위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발달권은 제3세대의 새로운 인권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사회권(제2세대의 인권)과 연대권(제3세대의 인권)도 자유권(제1세대의 인권)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인권이다. 자유권을 포섭하며 상호 보완하는 3층 구조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자유권이 핵심을 이루어야 발달권은 위력과 효력을 더한다(와타나베 아키오 2008 「권리론에서 본 발달 보장·발달의 권리」 『인간발달연구소기요』[20·21 합병호] 122-141).

- ▶ **세 번째로** 능력 기준에서 필요 기준으로의 전환을 전망하고자 할 때, 그 단계와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와타나베 아키오 2019『능력·빈곤에서 필요·행복 추구로』일본표준).
- ▶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능력 규정 그 자체를 충분히 읽어내서 깊이 해석하는 방법이다(시미즈, 호리오 등). 둘째는 능력을 보충하는 적절한 구절을 더함으로써 그 뜻을 확충하는 방법이다(일본 1946 교육쇄신위원회 “그 능력과 적성에 맞추어”, 한국교육기본법 “능력과 적성에 따라”). 셋째로 특정 대상에 대한 대응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2005 개정 교육기본법 4조 2항: 장애인에 대해 교육상 필요한 지원 보장). 넷째로 능력 규정에 필요 규정을 병기하는 방법이다(핀란드 헌법: 능력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섯째로 더 상위의 원칙이나 이념을 헌법 및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이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발전)에 대한 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